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7드단20022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원 고	갑 (1942년생, 남)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을 (1959년생, 여)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	2017. 10. 19.
판 결 선 고	2017. 11. 16.

주 문

1. 피고와 소외 망 A 사이 및 피고와 소외 망 B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A(1998. 2. 10. 사망. 망 C의 오남이다. 망 C은 장남 D, 차남 E, 삼남 F, 사남 G를 포함하여 총 5명을 아들로 두었다)의 구 제적등본에는 망 A가 1959. 9. 14. 피고를 자신과 망 B(2000. 2. 11. 사망)의 친생자로 출생신고(이하 '이 사건 출생신고'라 한다)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도 피고는 망 A를 부로, 망 B을 모로 하여 그들 사이에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망 A와 망 B 사이의 자녀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유전자검사에서는 동인들 사이에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다. 망 A의 셋째 형인 망 F의 자녀도 피고는 망 F와 자신의 계모인 소외 엄** 사이의 자녀이자 자신과는 이복자매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망 A의 넷째 형인 망 G의 자녀들(이상 원고들과는 사촌) 또한 피고는 망 F와 그의 둘째 부인인 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 또한 자신이 망 A와 망 B의 친생자는 아니라고 인정하

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망 A 사이 및 피고와 망 B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 A와 망 B이 피고와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이 사건 출생신고를 하였고 그 밖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2012. 2. 10. 법률 제11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 A가 피고를 자신과 망 B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위는 분명치 아니하나, 설령 망 A와 망 B이 피고를 입양할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

였다 하더라도,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망인들과 피고 사이에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 A는 1959. 9. 14. 피고를 자신과 망 B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F는 1966. 12. 15.경 사망하였는데, 피고의 초등학교(1968. 2. 24. 졸업) 생활기록부에는 가족사항 란에 부는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고, 모는 소외 엄**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 가족란에는 형(兄) 1, 제(弟) 1, 매(梅) 1"로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 피고의 사촌들은 원, 피고가 어렸을 적 원고는 같은 마을의 안동네 본가에 살았고 피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엄**와 바깥 동네에 새집을 마련하여 살았으며,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망 A와 망 B의 보호 아래 양육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출생신고 시점부터 망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무려 40여 년간 위 망인들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위 망인들이 피고의 결혼식(1979. 6.경 혼인신고)에 참석하거나 피고가 위 망인들의 경조사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위 망인들의 사후에도 망인들의 제사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와 위 망인들 사이 및 피고와 위 망인들의 친생 자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망인들과 피고 사이에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망 A 사이 및 피고와 망 B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위 망인들의 자녀인 원고로서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공부상의 기재로 말미암아 발생할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 각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